



면책: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신청자는 근린지역 거리 행사 중에 또는 그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거나, 그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는 모든 성격의 법적 책임, 손상, 손실, 청구, 요구, 조치, 또는 모든 유형의 상해,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해당 시와, 공무원, 직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거나 변상을 요구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확인: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통행로에 배치될 모든 물건이 위 다이어그램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근린지역 거리 행사를 위해 다음 요구 사항을 읽었고, 이해하며, 이를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시의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 재산의 사용 및 행사 개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통행로(보도 및 거리)에서의 음주는 불법입니다
- 바운스 하우스/캐슬은 사유지에 설치해야 하며 통행로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안전 조끼를 착용한 모니터 요원을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양 끝에 배치하여 지역 주민과 비상 차량의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 **오스틴 소방국은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비상용 차선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폭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 차선의 폭을 15'(4.57m)로 줄일 경우, 거리 양 끝으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러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비상 차선의 폭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차선의 폭은 최소 25'(7.62m)가 되어야 합니다.
 2. 거리 주차를 할 수 있으려면 장애물이 없는 차선의 폭을 25'(7.62m)로 유지해야 합니다.
 3. 건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인 경우 장애물이 없는 차선 폭이 25'(7.62m)이어야 합니다.
 4. 교회와 학교 폐쇄 및 상업 지역 폐쇄의 경우, 비상 접근을 위한 장애물 없는 차선의 폭이 항상 25'(7.62m)이어야 합니다.